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GB생명보험

2. 조치일 : 2019. 4. 22.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총 18개의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6.1.1.~2018.5.30. 기간 중 4개의 추출기준(전체 추출기준의 22%)에서만 의심스러운 거래가 추출되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낮은데도 2009.12월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시스템 구축 이후 동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추출기준 관리가 미흡하고

추출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신원,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검토보고서에 자금세탁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내용 대신 단순히 거래사실 위주로만 기재하고 있는 등 검토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규에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절차 등을 명시하고 추출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검토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동 검토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람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업무 운영 불합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소유자인 자연인의 실지명의 및 국적을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회사 내규「자금세탁방지업무기준」에는 실제소유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등 관련 상위 법규와 상이하고

회사 내규에는 준법감시인을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준법감시부장을 보고책임자로 임명·운영하고 있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 법규와 다르거나 실제 운영 현황과 상이하므로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동 내규대로 실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자금세탁방지 관련 영업점 현장점검 및 감사 업무 운영 불합리

2018.6.1. 회사 내규「자금세탁방지업무기준」을 개정하여 준법감시부와 검사부가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점검 대상, 범위 및 항목 등 구체적인 점검 및 감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향후 영업점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부 및 검사부는 영업점 현장점검 및 감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람